

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9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2. 15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현안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